

교수 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수 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하여 학사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강지도 및 사전안내) 교학지원처와 해당학과는 아래사항을 안내 및 지도하여야 한다.

1. 교학지원처는 부모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안내책자 및 수강신청 시스템 등에 해당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2. 학생 소속 학과의 학과장 및 지도교수는 부모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수강지도하여야 한다.
3. 교학지원처는 자녀 등에 대한 강의회피, 사전신고제 등 공정한 학사관리를 위한 교원 유의사항을 명문화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4. 교학지원처와 소속 학과는 선택 및 교양 교과목 부모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필수 교과목의 경우에도 분반 구성 시 타 분반을 선택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3조(강의수강 사전신고)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에는 해당 교수는 교학지원처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성적평가 공정성 강화) ① 불가피하게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에는 최종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제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학생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성적 공정성 여부를 다음 학기 개시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목 시험채점 및 성적평가의 공정성 여부는 아래 사항에 대해 관련자료 검토 및 문답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해당 학생의 정상적인 출석 여부
2. 과제물 등의 제출 여부 및 적절한 점수의 부여 여부
3. 시험 문제의 사전유출 여부
4. 시험 답안지 채점의 공정성 여부(타 학생 답안지와의 비교 필요)
5. 기타 성적평가의 공정성 여부

제5조(성적평가 관련 자료보존) 성적평가 관련 자료보존은 최소 3년 이상으로 한다.

제6조(위반 시 제재조치) 자녀가 본인의 강의를 수강함에도 미신고, 성적산출 근거 미제출 등 위 사항을 위반한 교원에 대해 총장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2019. 5. 1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